



논산을 새롭게  
시민을 행복하게

의안번호	제121호
------	-------

<p>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</p>
--

제 출 자	논 산 시 장
제출연월일	2025. 8. 29.

#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121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8. 29.

제 출 자 : 논 산 시 장

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과장

## 1. 개정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의안의결(2024.11.25.)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,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위원회 위원의 회피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위원회 심의·의결의 공정성 확보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 제한 규정 신설(안 제9조제2항)
- 동일인의 위원회 과다 위촉 등 제한 신설(안 제9조제3항)
- 회피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선(안 제11조제3항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타사항

- 1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 [기획감사실-8826(2025.08.04.)]
- 2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복지정책과-24466(2025.07.29.)]
- 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대상 아님 [예산실-8392(2025.07.30.)]
- 4) 입법예고

가) 예고기간 : 2025. 7. 29. ~ 2025. 8. 18. (21일간)

나) 예고결과 : 의견없음

5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6) 충청남도 소관실과: 충청남도 새마을공동체과

## □ 개정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##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9조제2항 본문 중 “하여야 한다”를 “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동일인이 4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제11조제3항 중 “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”를 “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제9조제6항에 따라 4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현재 위촉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재위촉 또는 신규 위촉 시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성 명
입	자치행정과장	김 영 기
안	행정팀장	안 승 찬
자	담당자	김 찬 식 (746-5214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않도록 <u>하여야 한다</u>. 다만, 다른 법령·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③ ~ ⑤ (생략)</p>	<p>제9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하며, <u>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</u>. ----- -----.</p> <p>③ <u>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동일인이 4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한다. 다만,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~ ⑥ (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)</p>
<p>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<u>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</u>.</p>	<p>제11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<u>심의·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</u>.</p>

**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**

○ 해당없음

**2. 비용추계결과****가. 추계의 전제**

○ 해당없음

**나. 추계결과**

○ 해당없음

**3. 작성자**

자치행정과장 김 영 기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 □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제78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.

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
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